##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02

발의연월일: 2022. 9. 7.

발 의 자:최승재·권명호·김선교

김성원 · 김학용 · 김형동

노용호·서범수·유경준

이명수 · 이인선 · 이종성

장동혁 · 조정훈 ·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허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가맹점들이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융통 등 운영상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이에 법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 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
	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
	부터 3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